

# 개정 국적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 병 도\*\*

## 목 차

I. 머리말	III. 개정 국적법의 주요 내용
II. 국적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국적법 개정의 배경 -국적제도의 선진화?
1. 국적 개념에 대한 정의	2. 주요한 특징과 개정 내용
2. 국적의 연혁	IV. 개정 국적법에 대한 평가
3. 국제법상의 국적의 의미	1. 개정 국적법의 문제점
4. 국제인권법과 국적	2.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문제점
5. 국적의 부여와 박탈	V. 결 론
6. 국적의 저축-복수국적자의 문제	

## I. 머리말

세계는 지금 국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는 눈앞에 국경 없는 세계 공동체가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내문제(domestic matters)로 다루어왔던 인권이나 환경문제 등이 국제문제(international affaires)로도 취급되어 국제법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관련 규범들이 형성되고 적용되고 있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다. 더구나 교통수단의 비약적인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의 발전으로 한 사람이 어떤 한 국가의 국민으로만 살아가도록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질곡(桎梏)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어떤 특정

\* 이 논문은 2010년 12월 16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입법정책센터와 아시아법센터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세미나(동아시아국가의 이민정책과 국적제도)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가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영산대학교 최경옥 교수님과 숙명여자대학교 정경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국가의 국민으로 살기보다는 ‘지구촌’의 세계시민(world citizen)으로 살아가거나 그렇게 살고자 욕망한다.

그러면 이제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nation)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 국민이 없는 국가를 국가로 계속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국가’만을 회원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UN<sup>1)</sup>의 회원국은 192개국이며, 인구가 만 명도 되지 않은 Nauru<sup>2)</sup>를 포함하여 모두 국민(nation)과 영토(territory)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법의 실행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영토라는 실제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공간(cyber space)에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것 보다 국민이 없는 국가를 창설하는 것은 더 인정하기 어렵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면서 그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가치와 의미를 새겨 보면 ‘국민’이 국가 설립과 존속의 요체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1933년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Montevideo Convention on Rights and Duties of States) 제1조에서 국가의 구성요소로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sup>3)</sup> 여기에 국가의 인적 구성 요소의 하나로 ‘항구적 인민’(permanent population)을 적시하고 있다. 누가 한 국가의 항구적 인민에 속하는가는 원칙적으로 각 국가가 결정해야 할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국가들은 각자의 국적법을 통하여 이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1) UN헌장 제4조는 “UN회원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peace loving state)에게 개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Nauru는 1999년에 UN회원국이 되었다. 수도는 Yaren이며 국토면적은 21km<sup>2</sup>, 화폐는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언어는 영어와 나우루어이다.

3) 동 협약 제1조는 “국제법의 인격자로서의 국가는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a)항구적 인구(permanent population), b)정해진 영토(defined territory), c)통치조직(government), 그리고 d)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capacity to enter into relations with other states),”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국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일까? 이제 복수국적은 국제적 추세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야만 국가이고 인권침해 국가인가? 그렇다면 대다수 국가들이 세계화를 주창하면서도 자국민과 외국인(즉 자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을 구별하여 여전히 외국인에게는 다양한 내용의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국경선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외국인의 입출국을 제한하고 심지어 추방하는 경우는 왜 일까? 국경 없는 세계에 국적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왜 그토록 ‘난민’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그 지위 인정여부를 결정할까? 오늘날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자국민이나 외국인이나가 중요하지 않고)개인 각자의 경제활동이 중요하다면서 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가 간의 통상협상에 사활적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자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즉 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까다로운 입국심사절차를 강요하는 것일까?

갈수록 국경선 없는 세계 사회를 주창하지만 여전히 국가주권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국적의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평소 이러한 상념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에 이 글의 내면에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한국정부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여 최근에 개정한 한국 국적법<sup>4)</sup>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주요 내용을 국제법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적에 대하여, 특히 국제법상 국적의 의미에 관하여 고찰을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개정 국적법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4) 법률 제10275호, 2010. 5. 4. 일부개정.

## II. 국적에 대한 일반적 고찰

### 1. 국적 개념에 대한 정의

국적(國籍, nationality)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그 동안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대체로 국적을 ‘어떤 사람을 특정한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적 유대(法的 紐帶, legal tie)’라고 정의하고 있다.<sup>5)6)</sup> 즉 국적이라 함은 어떤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민(nation)이 되는 자격 또는 지위를 의미한다.<sup>7)</sup> 어떤 개인을 특정한 국가의 인적 관할권 아래에 놓이게 해주는 법적 유대이다.<sup>8)</sup> 이런 의미에서 국적은 국가가 자국민에 대해서 행사하는 인적 관할권의 기준 또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sup>9)</sup> 그리고 누가 한 국가의 국민이 되는가는 원칙적으로 각 국가가 결정해야 할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이기에 국가들은 각자의 국내법(주로 국적법)을 통하여 이 문제를 규율한다.

5) 석동현, “국적의 개념과 그 득상에 관한 고찰”, 법조 통권 제494호(법조협회, 1996. 12), 28쪽.

6) 국제사법재판소(ICJ)는 Nottebohm사건(1955)에서 국적을 개인과 국가 간의 법적 연결고리(legal bond)로 정의한 바가 있다(“Nationality is a legal bond having as its basis a social fact of attachment, a genuine connection of existence, interests and sentiments, together with the existence of reciprocal rights and duties”), Nottebohm case, ICJ Reports(1955), 4쪽, para. 23.

7) 권영성 교수는 국적이라 함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이라고 간단히 정의하고 있다(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서울: 법문사, 2009), 117쪽).

8) 이러한 법적 유대가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지위(legal status)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국적은 법적 관계와 법적 지위 양자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lbrecht Randelzhofer, “Nationality”,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8(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85), 418쪽.

9) 인적관할권의 기준으로서의 국적은 자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에게도 인정되며, 선박, 항공기 그리고 우주물체에도 국적 개념과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국적은 국내법상 개념인 동시에 국제법상 개념이기도 한다. 즉 개인이 특정한 국가에 대하여 특별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부여한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자격 또는 지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적의 국내법상 효과와 국제법상의 효과는 다르다. 어떤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일단 유효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국적의 국제법상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즉 다른 국가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요건인 진정한 관계(genuine connection/link)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 2. 국적의 연혁

국적의 개념은 지연관계(地緣關係)에 기초를 두고 있었던 봉건시대에 존재했던 ‘해소할 수 없는 충성(indissoluble allegiance)의무’ 또는 ‘영구적 충성(perpetual allegiance)의무’에서 그 연혁을 찾을 수 있다. 토지의 영유관계를 기초로 성립된 봉건제도 아래서 충성의무는 지연관계를 기초로 성립한 것이며, 이러한 충성의무는 국왕의 영토에서 출생하면 시원적으로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11세기 영국에서 국왕에 대하여 충성의무를 지는 자는 그 영역 내에서 거주하는 영민(領民)으로 이들은 국왕의 신민(臣民, subject)으로서 국민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봉건적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었던 이와 같은 관계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sup>10)</sup>

국적개념이 봉건시대의 지연관계로부터 분리된 것은(즉 오늘날 이해하는 국적 개념은)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국민주권사상에 입각한 근대 국민국가가 탄생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사람을 토지에 종속된 신민(臣民)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으로 파악하기 시작하

10) 석동현, 앞의 논문, 30쪽.

였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대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등의 과정에서 국민 참정권의 확대, 국민개병제도의 실시, 국제적 인적 교류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누가 자국민인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나타나면서 부터이다.<sup>11)</sup> 즉 국가는 자국의 구성원이 되는 자와 그렇지 아닌 자를 구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구별의 기준을 국적이라는 개념으로 확립하였고, 자기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국민’(nation)의 지위를 부여하고, 자기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외국인’(alien)으로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1791년 프랑스헌법의 시민권조항과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의 국적조항은 이후 유럽 국가의 국적법제에 영향을 주었다.<sup>12)</sup>

우리나라는 제정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sup>13)</sup>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국적법이다.<sup>14)</sup>

### 3. 국제법상의 국적의 의미

국적은 국민으로서 개인의 자격 또는 지위를 의미하는 동시에 개인의 기본적 권리(국적권)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은 국적으로 인해 인권의 향유주체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sup>15)</sup> 과거에 국적을 어떤 개인이 어느

11) H. van Panhuys, *The Role of Nationality in International Law*(A.W. Sythoff, 1959), 32-33쪽; 이장희, “한국 국적법의 국적법적 검토와 개정방향”, 외법논집 제5집(한국외대 법학연구소, 1998), 338쪽.

12) 이철우, “충성과 소속의 분열과 조화”, 정인섭(편), *이중국적*(서울: 사람생각, 2004), 61쪽.

13) 대한민국 헌법 제2조 1항.

14) 우리나라 국적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을 비롯한 연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윤철, “대한민국 국적법의 현황과 문제점”, *일감법학 제17호*(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상반기), 6-11쪽; 석동현, 앞의 논문, 48-50쪽 참조.

15) 개인의 인권으로서 국적권은 국적취득권, 국적보유권 및 국적이탈권을 내용으로 한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관리하는데 주로 활용하였으나 오늘날은 국적이 개인의 인권의 한 종류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은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갖게 된다.<sup>16)</sup>

국제법 차원에서 국적이란 “국제법의 일정 목적상 특정한 국가에 소속되는 개인의 지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17)</sup>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은 영토관할권과 인적 관할권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국적은 국가의 인적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한계가 되는 법적 연결고리(인연)이다.<sup>18)</sup> 따라서 국가는 외국에 있는 자국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다.

국제법에서 국적은 다음의 두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sup>19)</sup> 첫째,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에 대해서만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의 청구국가는 국적국가(state of nationality)이어야 한다. 국적은 국가가 자국민을 위하여 사건을 떠맡는 것을 가능케 하는 국제적 연결고리이다. 둘째, 국적은 국가의 인적관할권 행사의 근거 또는 기초로 국가는 외국에 있는 자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적은 국가의 역외입법관할권(extraterritorial legislative jurisdiction) 행사를 위한 기초로서 기능할 수 있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국적국가의 국민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적자는 자국

다. 이장희, 앞의 논문, 338쪽.

16)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서울: 박영사, 2010), 581쪽.

17) Maximilian Koessler, “ ‘Subject’, ‘Citizen’, ‘Nationa[n]’ and ‘Permanent Allegiance’ ”, *Yale Law Journal Vol. 56*(The Yale Law Journal Company, Inc., 1946-47), 58쪽.

18) 유병화, 國際法 I (개정2판)(서울: 진성사, 1995), 449쪽.

19) 김대순, 國際法論(제15판)(서울: 삼영사, 2010), 716-717쪽.

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sup>20)</sup> 첫째,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그 국가에 자유로이 출입국할 권리가 있다.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이러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국적 국가는 자국민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어떠한 이유로 추방을 비롯하여 강제출국을 당한 경우에 그 자국민을 받아들일 국제법상의 의무를 진다. 즉, 국가는 외국으로부터 자국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둘째,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그 국가에서 체류 또는 거주할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인정해 줄 의무는 없다. 셋째,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그 국가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등 참정권을 향유하며, 공무담임권을 보장받게 된다. 참정권, 공무담임권은 국적에서 유래한다. 넷째,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그 국가에 병역 및 납세의 의무를 부담한다. 다섯째, 국적은 섭외사범에 있어서 연결점이다. 섭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준거법을 정해야 하는데 이 때 국적이 중요한 연결점이 된다. 여섯째,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의 취득하거나 각종 사업권이나 자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일곱째, 국적자는 의료보험 포함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수국적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한 사람이 여러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면 해당 국가들로부터 여권(passport)을 발급받을 수 있고, 출입국 및 체류상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아마도 복수국적 허용을 반대하는 대다수 사람의 생각은 복수국적자가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를 회피하고자 한다는 강한 의심에서 연유한다고 생각된다.

---

20) 석동현, 앞의 논문, 40-43쪽 참조.

#### 4. 국제인권법과 국적

국제인권법의 기본 방향은 개인을 국가의 소유물을 보는 전통국제법의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국적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는 자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며, 또한 자국민이 아니더라도(즉 외국인에게도) 기본적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국제인권법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국적에 대한 국가의 전통적인 시각과 국제인권법의 시각은 다르다. 또한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이른바 제3세대 인권<sup>21)</sup>은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개인이 국제공동체의 모든 국가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적의 의미를 매우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인권은 여전히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즉 개인의 입장에서 국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대체로 고통을 의미한다.<sup>22)</sup>

이런 면에서 개인에게 있어서 국적은 보호막이면서 질곡(桎梏)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인권법은 바로 이것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인권법은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발생 당시 어느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호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는 것이다. 물론 개인이 국적을 보유하거나 버리는 것 자체가 인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아니한다.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하지 아니하며,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 국제인권법의 교본이라 볼 수 있는 1966년 국제인권규약(경

21) 제3세대 인권에 관해서는 박병도, “제3세대 인권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0집(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6), 1-22쪽 참조.

22) 김대순, 앞의 책, 27쪽.

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세계인권선언 제15조상의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조 3항은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국제인권법이 국가주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국적이 없는 사람은 인권을 향유하는데 있어 지장이 있을 수 있음이 시사되어 있기 때문이다.<sup>23)</sup> 그 자체가 인권으로서 혹은 인권의 전제조건으로서 ‘국적’과 국가주권의 일부로서 ‘국적의 부여와 박탈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리고 국적을 ‘어떤 사람을 특정한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적 유대’라고 정의하는 경우에, 법적 유대를 표현하는 술어에 있어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sup>24)</sup> 국적과 유사한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sup>25)</sup>

## 5. 국적의 부여와 박탈

국적의 부여와 박탈에 관한 국제법의 태도는 1930년 “국적법 저촉의 일정한 문제에 관한 헤이그협약”(Convention on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의 다음과 같은 규정에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조 누가 자기 국가의 국민인가는 각 국가가 국내법에 따라 결정한다. 그 법은 국제조약, 국제관습 및 국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23) 김대순, 앞의 책, 717쪽.

24)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적을 Staatsangehörigkeit로 표현하고 Nationalität는 개인의 인종적 혈통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독일어권인 오스트리아에서는 국적을 Staatsbürgerschaft로 표현하는데, 이는 영어의 citizenship에 해당한다.

25) 국적과 유사하면서도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 시민권(citizenship),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EU시민권(citizenship of European Union)에 대해서는 김대순, 위의 책, 717-721쪽; 석동현, 앞의 논문, 32-37쪽 참조.

법의 일반원칙들과 일치하는 한에서만 다른 국가들의 승인을 받는다.

제2조 개인이 특정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제3조 본 협약의 규정을 조건으로,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개인은 그 각각의 국적국에 의하여 자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국적의 부여 및 박탈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즉 국내관할권(national jurisdiction)에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국적을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국제법’과 ‘법의 일반원칙’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떤 문제가 전적으로 한 국가의 전속적 국내관할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국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적문제는 원칙적으로 한 국가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국가의 권리는 그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대해 부담할 수도 있는 의무들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 국가에게 전적으로 속하는 국내관할권도 국제법의 원칙들에 의해 제한된다.<sup>26)</sup>

국적박탈(denationalization)이 통상적으로는 신체적 학대나 고문을 동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적박탈은 “조직 사회에서 개인 지위의 총체적 파괴”(the total destruction of the individual's status in organ's society)하는 것이며,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have rights)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sup>27)</sup> 즉 국적은 “권리

26) 이런 취지의 논리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Nationality Decrees issued in Tunis and Morocco 사건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발견할 수 있다. PCIJ(1923), Series B, No.4, 24쪽.

27) 이러한 내용은 미국 연방최고재판소의 Trop v. Dulles(1958)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언급하였다. 356 U.S. 86(1958), 101-102쪽.

를 가질 수 있는 권리”이며 따라서 “권리 중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국적은 행실이 나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면허증 같은 것이 아니며 처벌의 한 수단으로 국적박탈을 이용하는 것은 잔인한 처벌이라고도 볼 수 있다.

## 6. 국적의 저축 -복수국적자의 문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적의 결정은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로 인하여 국적의 저축(conflict of nationalities) 또는 국적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사람이 2개국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중국적 또는 복수국적)와 어떤 국가의 국적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무국적)에 국적의 저축문제가 발생한다. 전자의 경우를 적극적 저축이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를 소극적 저축이라고 한다. 이들 양자의 경우 모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복수국적자의 경우 특히 병역의 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에 충성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국가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것인지에 관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무국적자는 상주국에서도 외국인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해당 상주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sup>28)</sup>

국적의 저축문제를 해소하기 국제사회는 ‘국적유일의 원칙’과 ‘국적 자유의 원칙’을 발전시킨 바가 있다. 국적유일의 원칙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국적을 가지되 오직 하나의 국적을 가지는 것을 이상(理想)으로 한다는 것이다.<sup>29)</sup> 국적에 관한 국제사회의 또 하나의 이상은 국적자유 원칙이다. 이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국적을 선택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적의 저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28) 홍성화, 국제법개론(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332쪽.

29) 이를 ‘단일국적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에 관해서는 석동현, 앞의 논문, 53-56쪽.

조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 1930년에 “국적법 저촉의 일정한 문제에 관한 헤이그협약”(Convention on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을 비롯하여 “이중국적의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군사적 의무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Military Obligation in Certain Cases of Double Nationality), “무국적의 일정한 경우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Certain Cases of Statelessness), “무국적에 관한 특별의정서”(Special Protocol concerning Statelessness) 등 4개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tatus of Refugees)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 1961년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등이 체결되어 국적 일반, 처(妻)와 자녀의 국적,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면제, 난민의 무국적방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복수국적을 전향적으로 대폭 허용하자는 주장 중에는 미국의 사례를 드는 경우가 흔히 보이는데, 여기서 일부 오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은 복수국적을 법에 의해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거나 또는 권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은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이 이중국적을 법으로 장려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중국적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꼭 하나만 택하라고 요구 하지는 않는다.<sup>30)</sup> 미국에는 “복수국적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복수국적이 가능한 것이다.<sup>31)</sup>

30) 예를 들면, 만약 스미스라는 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하고자 한다면, 미국 정부는 스미스에게 미국 국적을 버리라고 요구 하지 않는다. 스미스는 원한다면, 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다.

31) 이와 관련하여 한국법과 미국법은 법에 대한 근본적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만 합법이다. 예를 들어 국적법에서 “복수국적은 허용된다.” 라고 해야지만, 복수국적은 허용되는 것이다. 반대로,

### Ⅲ. 개정 국적법의 주요 내용

#### 1. 국적법 개정의 배경 -국적제도의 선진화?

그 동안 우리 국적법은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우리 국적을 선택하려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에게 엄격한 ‘외국국적 포기증명’을 요구하였으며, 국적선택기간 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시켜 버리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고수해 왔다. 그 결과 기존의 국적제도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 외국인재나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물론, 해외입양자나 고령의 동포가 우리 국적을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최근 10년간 젊은 병역자원을 포함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94%가 우리국적을 이탈(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등 인구역조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법무부는 지난 60여 년간 고수해오던 단일국적주의를 개선하고자 수년 간 오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국적취득자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 의무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10차 개정 국적법을 2010년 5월 4일 공포하였다.<sup>32)33)</sup> 우리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면서 이번 국적

---

미국의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은 모든 행위는 합법이다. “복수국적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법이 없는 한 복수국적은 허용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경우 허용되지 않은 것은 모두 금지 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한데, 미국의 경우 금지되지 않은 것은 모두 허용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법을 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는 말이다. 흔히 미국에서 생활은 ‘자유롭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에는 “금지 되지 않은 모든 것은 허용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법치 이념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반영되어 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2430](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2430) (워싱턴 중앙일보 2010년 4월 30일 게재 기사 참조)

32) 개정 국적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포일 현재 국적선택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를 고려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법 개정에 대해 한마디로 ‘국적제도의 선진화’라고 평가하고 있다.<sup>34)</sup> 우리 정부는 이번 국적법 개정을 통하여 우수 인적자원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결혼이민자 등 귀화자의 사회통합 지원, 해외입양인과 고령 동포에 대한 배려, 국적자동상실 제도 개선을 통한 인권증진 및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인구 순유출 억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선택할 수 있는 규정 등 일부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즉 공포일인 2010년 5월 4일부터 즉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불이행시 우리국적이 자동상실 되는 규정이 폐지된다(개정 국적법 제12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따라서 2010년 5월 3일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 복수국적자는 종전 법률에 따라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나, 2010년 5월 4일 이후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하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 경과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고서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우리국적이 상실된다. 둘째,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개정 국적법 제13조)이다. 따라서 기본 국적선택기간(만22세 전) 내에 있는 복수국적자와 병역을 적극 이행한 복수국적자는 2010년 5월 4일부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과거에 복수국적자였던 자가 종전 국적법에 따른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으로 이미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한 경우,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과 함께 국적재취득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부칙 제2조 1항) 넷째, 과거에 복수국적자였던 자가 종전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 국적을 선택한 경우, 공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할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부칙 제2조 2항). 그러나 위의 어느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 선택이 불가하다.

33) 우리 정부가 개정 국적법을 2010년 5월 6일 공포하면서 복수국적 관련 일부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함에 따라 이들 조항과 관련이 있는 해외교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LA의 LA총영사관에서도 같은 날 곧바로 신청자 접수 업무를 시작했다. 영사관을 통해 신청 가능한 복수국적 대상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대 중 현재 만 22세 미만으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출처: 미주 중앙일보·중앙방송 홈페이지,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27936](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27936))

34)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HP/MOJ03/menu.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51410000](http://www.moj.go.kr/HP/MOJ03/menu.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51410000)

## 2. 주요한 특징과 개정 내용<sup>35)</sup>

### 2.1. 제한적 복수국적의 허용

#### 2.1.1 한국도 드디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다?

이번에 개정된 국적법의 대표적인 특징은 오랫동안 고수해 왔던 단일 국적주의를 완화하여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 점이다. 복수국적은 우리나라 내 전체적인 인구감소를 막고 우수 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방안이다.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이중국적)을 갖게 된 2세들이나 외국인 고급인력, 영주 귀국하는 65세 이상의 시민권자 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기존 국적법은,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하였다. 즉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 비자를 받아야 하고 또 시간이 경과하면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국적법은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이 된 사람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민에 의해 후천적 즉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후천적 외국국적취득자는 복수국적의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 포기한 재외동포의 경우에도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

35) 개정 국적법의 주요 내용은 ‘법무부’의 2010년 5월 6일 보도자료, 개정 국적법 공포, 국적법 개정안 쟁점사항 및 법무부 입장 정리(2010. 3.), 개정 국적법 Q&A(2010. 7.) 등을 참고로 하였다.

이후에 한국에 영주 귀국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여야 한다. 65세 이후라도 미국에 계속 살고 있다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다. 두 번째는 한국 국익에 현저히 도움이 되는 ‘매우 우수한’ 인재에 해당될 때다. 매우 우수한 인재의 기준은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추후 정해질 것이다.

### 2.1.2. 복수국적 허용의 의미

종전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복수국적)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복수국적 허용’의 의미는 상대적이다. 출신 국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의 법률·제도 등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국적 포기증명’을 받지 않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외국에서 (우리국적 취득을 원인으로) 외국의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국적을 취득하면서 ‘외국국적 포기증명’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해당 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의 여권을 사용하면 이미 (대한민국 국적취득으로) 무효화된 해당 외국의 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즉, 우리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출신 국가에서 ‘자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자국의 국적이 상실

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신 국가의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여권만을 사용해야 출신 국가를 출입국하는 때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sup>36)</sup>

## 2.2. 개정된 주요 내용

국적법의 개정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외국인재 특별귀화제도, (2)귀화자의 원국적(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3)이중국적자라는 용어를 복수국적자라는 용어로 변경, (4)복수국적자의 법적지위 규정(국민처우의 원칙), (5)국적이탈 신고 의무 규정의 수정, (6)국적선택 촉구제도 신설, (7)국적선택기간의 제한 삭제, (8)복수국적자 관련 통보의무 규정(체계적 관리), (9)국적상실결정제도 신설 등이다.

### 2.2.1.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 요건 완화

종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률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 외국인재에 대하여는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특별귀화 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37)</sup>

---

36) 예를 들면 중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였더라도 중국의 국적법은 이 경우 중국의 국적을 즉시 자동적으로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여권에 중국 사증(비자)을 발급 받은 후 출입국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개정 국적법 Q&A(2010. 7.), 7-8쪽.

37) 개정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3호.

## 2.2.2.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및 외국국적 포기방식 변경

종전에는 외국인<sup>38)</sup>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6개월)이 너무 짧아 기간 내 포기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우리 국적이 다시 상실되는 사례가 많아 개정 국적법은 외국 국적 포기의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다.

개정 국적법에서는 일정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해도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외국 국적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우리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서약’방식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자, ③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④ 성년이 되기 전에 해외입양 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 ⑤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 ⑥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특정범위의 외국인이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취득시 우리나라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sup>39)</sup>

38)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sup>40)</sup> 여기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출입국시 외국여권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국 내 외국인 학교에도 다닐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각종 세금이나 규제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약은 2가지 경우에 적용된다. 즉 개정 국적법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정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해도 되도록 규정하였고,<sup>41)</sup> 또 다른 하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대한민국 국적선택시에도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해도 되도록 규정하였다.<sup>42)</sup>

법무부는 서약서 제출 후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각종 처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그 위반 정도가 심해 한국 국적보유가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적상실 결정 규정도 마련하였다.<sup>43)</sup> 이는 복수국적자가 적대적 행위 등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병역의무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국적 박탈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다.

### 2.2.3. 이중국적자의 용어 변경 및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명문화

종전 규정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모두 ‘이중국적자’로 규정하여 셋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중’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었고,

39) 개정 국적법 제10조.

4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개정 국적법 Q&A(2010. 7.), 2쪽.

41) 개정 국적법 제10조 제2항.

42) 개정 국적법 제13조.

43) 개정 국적법 제22조 1항 2호.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개정 법률은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또, 복수국적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복수국적자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한다. 즉 복수국적자라 함은 유효한 2개국 이상의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우리 국적법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에 남아 있더라도 복수국적자가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개정 국적법은 1년)간의 외국국적 포기의무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2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경우는 국적법에서 인정하는 복수국적자가 아니다. 외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준 것에 불과하다.

#### 2.2.4.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방식 변경

종전에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국적선택기간<sup>44)</sup> 내에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22세 전에 외국국적 포기 절차를 마치고 그 증빙을 갖추어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사람이 극히 적어 우리 국적선택을 용이한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44) 여기서 국적 선택기간이란 출생 등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우리 국적법은 일정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국적선택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 때 반드시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 기한을 말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개정 국적법 Q&A(2010. 7.), 2쪽.

나타났다. 그래서 개정 법률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적선택기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출생 및 기타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까지이다(이를 ‘기본 국적선택기간’이라 한다).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상 제1국민역<sup>45)</sup>에 편입되는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포기(이탈)를 하지 않으면 병역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연장된다.<sup>46)</sup>

기본 국적선택기간<sup>47)</sup>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와 출생 당시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이른바 ‘원정출산자’<sup>48)</sup>)에 대해서는 외국국적

45) 제1국민역이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병역법 제5조 1항 4호).

46)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국적선택기간과 관계없음.

47) ‘기본 국적선택기간’이라 함은 출생 및 기타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가 기본 국적선택기간이며,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내까지가 기본 국적선택기간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개정 국적법 Q&A(2010. 7.), 3쪽.

48) 원정출산자라 함은 종전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를 일반적으로 원정출산자라고 지칭하였다(광의의 ‘원정출산’). 그러나 개정 국적법에서는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추가 규정을 두고 있다(협의의 ‘원정출산’, 개정 국적법 제13조 3항). 종전의 국적법과 개정 법률의 차이점은 종전의 경우는 병역자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이며, 개정 법률의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개정 국적법 Q&A(2010. 7.), 1쪽). 예를 들면 부모가 미국에서 2년간 유학 중에 출생한 남자 아이의 경우, 종전에는 원정출산에 해당되어 병역을 이행해야만

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선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원정출산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의 선택이 가능하며,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될 뿐이므로 이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 2.2.5.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종전에는 국내외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우리 국적의 이탈(=포기) 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적의 이탈을 제한하였다.<sup>49)</sup>

### 2.2.6.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제도의 도입

종전에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내에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경우 곧바로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그 때에도 국적

---

우리 국적을 이탈(포기)할 수 있는 반면에 개정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국적 선택 시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즉, 국적이탈 시에는 제한을 받지만 우리국적 선택 시에는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원정출산으로 외국국적을 얻은 복수국적자라도 외국에서 3년 거주 등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49) 개정 국적법 제14조.

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무통지 자동상실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선택할 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가 서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국적선택명령이라 함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sup>50)</sup>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이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sup>51)</sup>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것을 말한다.<sup>52)</sup> 국적선택 명령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즉 하나는 종전에는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으나,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을 곧바로 자동 상실시키지 않고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준 후 그 때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이 우리나라를 출입국 하는 과정에서 외국여권을 여러 차례 행사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는 등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국적선택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sup>53)</sup>

또한 개정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의 국민 처우 원칙을 확립하였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국민으로만 처우되므로 출입국시 외국여권 사용, 외국인등록 등 외국 국적에 기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으

50) 개정 국적법 제14조의2 1항.

51) 개정 국적법 제14조의2 2항.

5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개정 국적법 Q&A(2010. 7.), 3쪽.

53) 개정 국적법 제14조의2 4항.

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국적을 취득할 때나 선택할 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가 그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 명령을 할 수 있고, 동 명령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 2.2.7.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제도 도입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하였다.

### 2.2.8.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개정 법률은 종전법에 비해 복수국적의 허용범위가 넓어 복수국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개정 법률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 2.2.9.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 신설

종전에는 국적업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위임근거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일부 업무를 소속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 2.2.10. 부칙 특례규정 신설

개정 국적법의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로 하되,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선택의무 불이행시 우리국적을 자동 상실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폐지한 조항을 포함한 국적선택의무 조항 및 국적선택절차 조항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였다.<sup>54)</sup> 그리고 종전의 국적선택기간 도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자에 대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개정법률 공포 후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우리국적 재취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국적을 선택한 자도 개정 법률 공포 후 5년 내에 해당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우리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두었다.<sup>55)</sup>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라 함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을 하고 있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체류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56)</sup> 또한 종전 법률에 따라 귀화 후 6개월 내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못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유보한 자에 대해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57)58)</sup>

54) 개정 국적법 부칙 제1조.

55) 개정 국적법 부칙 제2조.

5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개정 국적법 Q&A(2010. 7.), 36쪽.

57) 개정 국적법 부칙 제3조.

58) 귀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 IV. 개정 국적법에 대한 평가

### 1. 개정 국적법의 문제점

분명히 오늘날 복수국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적법 개정은 세계화, 노동력 이동 촉진, 국제인적교류 증대 등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수국적을 허용하여 국민통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해외로 입양된 어린이들의 ‘국적회복’ 요구를 수용, 해외 인재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고 국민의 국적이탈을 막고 국가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는 젊은 노동인구의 확보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개정 법률은 국적부여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단일국적주의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즉 개정 국적법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수국적 문제보다 국익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인재 영입 조치가 핵심으로 국적부여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다. 외국인재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해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족, 화교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이는 개정 법률이 단일국적주의 원칙 포기가 아니라 예외적이고 소극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업연수생이나 숙련노동자를 영입해 이들이 5년 이상 거주할 경우 국적을 주도록 노동법 등 관계 법령을 고치거나 ‘우수 인재’ 범주를 숙련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정 국적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내(2011년 1월 1일부터는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의 법률이나 제도 등으로 6개월 내에 외국국적 포기가 어려운 사람에게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일정기간(취득일로부터 2년) 연장해 주는 것을 ‘외국국적 포기유보’라고 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개정 국적법 Q&A(2010. 7.), 4쪽). 2011년 1월 1일부터 외국국적 포기유보제도는 폐지되었다.

첫째, “국익에 기여할 우수 외국인재”는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외국국적 포기하지 않아도”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있는데, 역사문화공동체의 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최소한의 거주기간도 없이 그 모호한 “국익”이란 기준을 특별대우의 잣대로 삼아도 좋은가? 국가경쟁력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우수 외국인재에게 국적 대신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우수 인재”라는 개념은 “국익” 만큼 모호한 개념이다. 그리고 외국인재 유치의 실효성 및 선정기준에도 문제가 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교수나 유학생, 기술자 등 외국인 전문인력은 외국인 총 체류자의 3%(3만 4천835명/2009. 5. 통계)뿐이며 이마저도 62%는 회화지도 교사다. 그리고 개정 국적법상 우수인재 선정 기준(대학이나 연구소 소속 등)에도 문제가 있다.

셋째,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를 국민통합에 두었는데 나라 잃은 시절 우리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백성의 후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즉 여러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으로 귀화하지 않고 살아온 재일동포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과 달리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복수국적을 선택할 수 없는 중국·일본 등에 사는 동포들에 대해선 영주권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복수국적의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음에도 개정 법률은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

넷째, 개정 법률에 일부 폭력적인 조항이 신설되었다. 개정 국적법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질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국적상실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sup>59)</sup> 과거 군사정권 때 반정부 성향을 가진 재외동포들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하거나 준법서약서를 요구한 적이 있었기에 이 신설 조항이 악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기우(杞憂)를 떨칠 수 없다.

---

59) 개정 국적법 제14조의3.

다섯째, 여전히 화교문제를 반영하지 못했다. 국적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국내 거주 화교에 대해 국적부여대상에 제외→포함→제외 식으로 오락가락 할 정도로 의견의 차이가 심했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복수국적 허용 배경에 부합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제화나 화상(華商) 유치 등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장기간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화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sup>60)</sup> 또한 제한적이거나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이라면 결혼이민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여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 2.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문제점

### 2.1.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복수국적 취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복수국적 허용 자체는 이제 불가피한 일이다. 국제적 추세도 그렇거니와 소수자들의 사회 통합과 권리 존중이라는 면에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원칙과 명분이 소수의 이익에 악용될 가능성 역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 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2010년 9월 27일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성별·국가별 이중국적자 현황’에 따르면 2006년 4만164명이던 이중국적자수는 2010년 6월 현재 6만6306명으로 6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에는 전년 대비 4779명(12%)이 늘어났지만 2009년에는 전년에 비해 9581명(18%) 늘어나 증가 폭 또한 점점 커진

60)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화교에게도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고려해 해외입양인과 외국 인재까지로 국한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뒤 “국적법 개정과 시행에 따른 추이를 지켜본 뒤 대상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법 개정안 쟁점 사항 및 법무부 입장 정리(2010. 3.) 3쪽.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국적자가의 외국 국적은 미국이 53.5%(3만5478 명)로 가장 많았다. 미국 국적은 2006년 2만2914명에서 2010년 상반기 현재 3만5478명으로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절반(48%)가까이를 차지했다.

<표> 이중국적자 현황(단위: 명)<sup>61)</sup>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상반기)
<b>총계</b>	<b>4만164</b>	<b>4만4943</b>	<b>5만1558</b>	<b>6만1139</b>	<b>6만6306</b>
미국	2만2914	2만5838	2만9259	3만3127	3만5478
일본	1만2826	1만3625	1만4499	1만5422	1만5892
베트남	140	180	405	3955	5182
캐나다	1127	1395	1704	2104	2371
중국	449	536	701	786	851

내년부터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면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수국적을 병역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당연히 만들어야 한다. 정부 자료를 보면 국적 이탈의 절반 이상, 많게는 3분의 2 이상이 병역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2005년 당시 군대를 갔다 와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국적 포기가 급증한 일도 있었다. 이번 개정 법률이 그 당시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국내 거주자의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도 그런 부작용을 염려한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허점은 여전하다. 예컨대 이번 개정 법률을 적용하면,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6살 이후에 귀국해 고급 인력으로 인정받아 쉽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의무 없이 권리와 혜택만 누리는 이들 때문에 계층적 위화감이 커지는 것이다.

61) 경향신문, “이중국적자, 5년 새 65%나 늘었다.”, 2010년 9월 28일자 2쪽.

## 2.2. 복수국적에 따른 기타 대책 마련 필요

복수국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복수국적자가 학교입학·사회보장제도·참정권 등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통합을 위해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이 도리어 국민통합을 해치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면 안 될 일이다. 복수국적 허용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투표권은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를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62)</sup> 복수국적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한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부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외국 체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정할 것인지 등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에게 무제한적으로 참정권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어쩌면 복수국적 허용의 범위보다 복수국적 부여 대상자에게 어떤 조건으로 참정권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의 합의가 더 선결 과제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복수국적자의 형사관할권 행사나 범죄인인도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복수국적자가 일정한 공직 등 특정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 국적법<sup>63)</sup>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종사할 수 없는 분야에 관련 있는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sup>64)</sup>

62) 2009년 2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재외국민들도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63) 개정 국적법 제11조의2 2항.

64)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 취업하거나 군대 장교나 하사관으로 입대하는 경우 미국국적이 박탈된다. 미국 연방법 '8 U.S.C. § 1481(4)(A)&(B)'에 따르면 18세 이후 외국 정부나 산하기관, 기업에 채용

## V. 결 론

오늘날 국경선 없는 세계공동체가 도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창하지 만 여전히 국제관계에서 국가주권은 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 어느 국가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도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한 사람이 하나의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국적법의 이상(理想)으로 생각했던 국제사회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복수국적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세우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적법 개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통합이나 사회통합 보다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 무게를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수 외국 인재 보다 우리나라에서 장기 거주한 이주민이나 한국에 실제 공헌도가 높은 사람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국민통합 또는 사회통합을 위해 더 적절하다 할 것이다. 이번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 허용됨에 따라, 복수국적 허용 그 자체는 국제적 조류를 따르는 것 일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사회 통합과 권리준중이라는 면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출산, 병역의무 기피와 같은 이중적이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태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을

---

· 임명되는 사람의 시민권은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방법 '8 U.S.C. § 1481(3)(B)'에 의거 미국 태생 시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 등 모든 시민권자는 외국군대에서 장교(Commissioned Officer) 또는 하사관(Non-Commissioned Officer)으로 복무하면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물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 귀화한 뒤 다시 복수국적을 신청한 시민권자들은 한국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서 일하거나 장교로 군대에 입대하는 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셈이 된다([http://www.koreanfedus.org/main/bbs/board.php?bo\\_table=news\\_all&wr\\_id=537&page=11](http://www.koreanfedus.org/main/bbs/board.php?bo_table=news_all&wr_id=537&page=11), 2010년 12월 10일 검색).

감안하여, 그러한 부작용과 선입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국적도 인권의 한 종류로 취급하고 있다. 단일 국적이든 복수국적이든 한 번 취득한 국적을 사상과 종교와 인종을 이유로 박탈한다면 인권침해이다. 개정 국적법에는 이러한 요소는 없어 보이나 후천적으로 귀화 등에 의하여 우리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게 되었다. 국적문제는 국내문제라고 하지만 이제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중국적 문제의 사회적 파장이 큰 데다 대상자들의 기회주의적 행태 등에 대비해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이나 외국여권 사용을 금하는 등 편의대로 국적을 바꿔 행사하지 못하게 ‘국민처우원칙’에 따라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투고일 2011년 1월 15일, 심사일 2011년 1월 21일, 게재확정일 2011년 2월 8일)

**주제어** : 국적, 시민권, 한국 국적법, 단일국적, 이중국적, 복수국적, 귀화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법문사, 2009.  
김대순, 국제법론(제15판), 삼영사, 2010.  
유병화, 국제법 I (개정2판), 진성사, 1995.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0.  
홍성화, 국제법개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H. van Panhuys, *The Role of Nationality in International Law*, A.W. Sythoff, 1959.

### 2. 논문

- 박병도, “제3세대 인권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0집, 건국대 사회정책연구소, 2006.  
석동현, “국적의 개념과 그 득상에 관한 고찰”, 법조 통권 제494호, 법조협회, 1996년 12월호.  
이상희, “한국 국적법의 국적법적 검토와 개정방향”, 외법논집 제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이철우, “충성과 소속의 분열과 조화” 정인섭(편), 이중국적, 사람생각, 2004.  
최윤철, “대한민국 국적법의 현황과 문제점”, 일감법학 제17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Maximilian Koessler, “‘Subject’, ‘Citizen’, ‘Natioanl’ and ‘Permanent All egiance’”, *Yale Law Journal Vol.56*, The Yale Law

Journal Company, Inc., 1946-47.

Albrecht Randelzhofer, "Nationality",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8*,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85.

### 3. 판례 및 자료

법무부, 개정 국적법 공포, 2010년 5월 6일 보도자료.

\_\_\_\_\_, 국적법 개정안 쟁점사항 및 법무부 입장 정리, 2010. 3.

\_\_\_\_\_, 개정 국적법 Q&A, 2010. 7.

경향신문, 2010년 9월 28일 2쪽.

Trop v. Dulles(1958), 356 U.S. 86(1958) at 101-102.

PCIJ(1923), Series B, No.4.

ICJ Reports(1955)

<http://www.moj.go.kr/HP/MOJ03/menu.do?strOrgGbnCd=100000&strRtn>

URL=MOJ\_51410000(법무부 홈페이지, 국적법 개정관련 자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2430](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2430)(워싱턴 중앙일보 기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27936](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27936)(미주 중앙일보·중앙방송 홈페이지)

[http://www.koreanfedus.org/main/bbs/board.php?bo\\_table=news\\_all&wr\\_id=537&page=11](http://www.koreanfedus.org/main/bbs/board.php?bo_table=news_all&wr_id=537&page=11)(2010년 12월 10일 검색)

[ Abstract ]

## Critical Review and Assessment on the Revised Nationality Law of Korea

Byung-Do Park\*

This article seeks to review the major contents of the Nationality Law of Korea which is revised, 4 May 2010. And this paper aims to analyze critically the main contents of the Nationality Law through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o do this, particularly, I will try to review on the meaning of nationality in international law and assess the Nationality Law of Korea based on this analysis.

Nation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means a person belonging to a particular country a legal tie. Particularly, nationality means that some individuals 'state' of the people(nation) status or position means being. Some individuals placed under the personal jurisdiction of a particular country is a legal bond. In this sense, nationality, against the people of the state to exercise personal jurisdiction based on the criteria or can be said. And who is going to be a national of a country, in principle, each country should decide matters falling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because the state of their own law (primarily the Nationality Law) shall govern this issues.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eclared in Nottebohm case(1954) as follow:

---

\* Professor of Law School, Konkuk University

“Nationality is a legal bond having as its basis a social fact of attachment, a genuine connection of existence, interests and sentiments, together with the existence of reciprocal rights and duties”

Nationality, while the meaning of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right of nationality) means status as a nation of individuals. Therefore, the country due to personal enjoyment of human rights as a subject will have a position. In the past, nationality, belonging to any person in any jurisdic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administration was mostly used. Today, the human rights of the nationalities of these individuals have been identified as one kind. Therefore, the individual's country of nationality shall not arbitrarily deprived,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change his nationality.

In the meantime, the Nationality Law of Korea has held fast to the strict single nationality. Continuous criticism of single nationality has been constantly raised. Instead, In the last 60 years, Korea had adhered to a single nationality, for many years to improve the best foreign talent concluded after a long discussion of naturalization requirements are relaxed, national mitigation obligations of foreign nationality renunciation of the acquirer, born multiple nationality such as improving national to the main content of the 10th amendment May 4, 2010 Nationality Law was announce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revised Nationality Law that had long held fast to relieve single nationality is granted a limited multiple nationality. Korean government emphasized that the above information, a word about this amendment to the Nationality Law, ‘the advancement of national institutions’ that have been evaluated.

However, this newly revised Nationality Law can be evaluated that it put more weight on national competitiveness rather than national inte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This revised Nationality Law abandoned the principle

of single nationality is not unusual to be passive, allowing multiple nationality can be evaluated. Korean government efforts to improve a nationality institution for many years, which still showed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n a special naturalization system, “national interest” provisions that are vague criteria. Second, the “talented” the concept of “national interest” as an ambiguous concept. Third, ethnic Koreans in Japan and China can not solve nationality problems. Fourth, the revised Nationality Law, the “acts contrary to the national interest” or “interfere with public order act of causing” the loss of nationality may make decisions that the system was established. This provision has the potential to abuse.

And the device of prevention from evading military service in preparing for a multiple nationality is required. In addition, for multiple nationality, because the general public's eye to the highly praised the government's program should be for overcoming objections. Admission of multiple nationality, Social Security benefits, voting rights, etc. not to be unjust policy of detail is required.

**Key Words :** nationality, citizenship, Nationality Law of Korea, single nationality, dual nationality, multiple nationality, naturalization